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7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20 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2020 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

### 세무 및 법률정보

- 2019 세법개정안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 한올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올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올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올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25]

□ 2020 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9.4.1. 시행)

- |                   |                      |
|-------------------|----------------------|
| ① 新리스크기준 적용의 적정성  | ② 총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 ③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 올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앞당겨짐(매년 12 월→6 월)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등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요

1.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20 년(2019 년 결산 재무제표 대상)에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9.6 월)에 미리 안내하고, '20 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2020년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2. 2020 년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신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가.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新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합니다.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는데 종전까지 리스 사용회사(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 왔음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하여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가 기대

◦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新리스기준(K-IFRS 1116)' 관련 내용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기초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의 일부



□ 회계오류 예시

① 제련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 ○○(고객사)는 전력발전업자(공급사)로부터 특정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구매하는 계약(20년)을 체결\*

\* ○○(고객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였으며, 공급자는 고객요구에 따라 발전소를 지은 후 운용·유지할 책임이 있음(전기의 생산여부, 생산시기 등은 설계를 통해 미리 결정됨)

- 공급자는 실질적 자산 대체권이 없고, ○○(고객사)는 사용기간 내내 발전소를 독점사용

- ○○는 발전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동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여 발전소의 사용방법 및 목적 등을 미리 결정하는 등 사용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잘못 처리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② 코스닥 의류업체인 △△는 리스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관련하여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단기리스는 리스 인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계약이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③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보유중인 건물을 '19 년에 매각하고 동 건물을 다시 리스함에 따라 이를 판매후리스 거래로 보아 매각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 우선 적용되는 수익기준(K-IFRS1115)에 의하면 건물 이전은 리스계약상 재매입약정\*으로 인해 판매거래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거래는 금융약정거래(차입거래)로 처리해야함에도 판매후리스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관련 수익을 과대계상

\* 재매입약정 내용 : 재매입가격>판매가격인 선도계약을 체결

**□ (선정기준) 신규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총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나. 총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 (선정배경)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총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합니다.

◦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

총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내용

**총당부채 등**

**총당부채**

- 다음을 모두 충족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를 인식
  - 과거사건 결과 현재의무(법적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
  -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
  -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금융보증 등**

-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에 대한 손실부담 계약 등
  - 최초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K-IFRS1109 기대신용손실 모형 등의 방법에 따라 후속 측정

**우발부채 등**

**정의** 과거사건으로 생긴 다음의 의무

-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 발생 여부로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필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의무

**인식** 재무제표에 미인식 → 주석으로 공시

회계오류 예시

- ① 코스닥 기계제조업체 △△는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보증기간(3년)내 제조결함에 대해 판매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객의 제품보증 청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음에도 관련 총당부채를 미계상
- ②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법률전문가가 동사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음에도 소송 관련 총당부채를 미계상
- ③ 코스피 건설업체 ○○는 대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채무에 대해 총당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PF 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선정기준) 총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총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

다.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 등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

(선정배경)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하여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계오류 예시

- ① 코스닥 기계 장비제조업체 △△는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된 노무비 등은 제외하고, 재료비만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집계하여 진행률을 과다하게 측정함으로써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 ② 코스피 전기장비 제조업체 □□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③ 코스닥 설비 제조업체 ○○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라.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선정배경)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합니다.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정보처리업체 ○○는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 동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① 코스피 비금속채권업체 □□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② 유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고,

-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하여야 할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단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 (선정기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향후계획**

**3. 향후계획**

□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

◦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입니다.

**감사인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현황**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12]

**배경**

**1. 배경**

□ 新외감법 개정으로 '19년 11월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지정대상시기, 통보시점 등 관련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특히, 매년 일정 수를 지정("분산시행")할 경우 그 지정 회사수와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커트라인)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합니다.

□ 이에 안정적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확정된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의 대부분(98%)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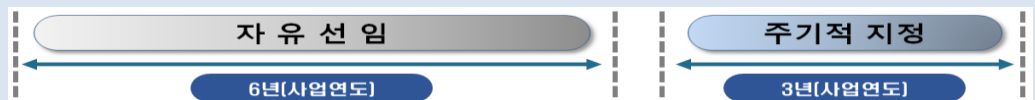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의 지정시기와 분산시행에 따라 첫해에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

주기적 지정제 개요

◇ (개요) 연속하는 6 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①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②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 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 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다만 최근 6 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중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19.11 월 이전 체결)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



◇(통보시기) '19.11 월에 2020 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 월 사전통지)

◇(회사의무)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 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결과

전체상장사 기준

2.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결과

가. 전체상장사 기준

□ (시행첫해 지정대상)\*20 년에는 주기적지정 면제\*,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 사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되며

\* (면제사유)최근 6 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

\*\* (연기사유) '18 년 또는 '19 년에 감사인을 선임(3 년)하여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감리중인 경우 등

◦ 당초 발표한대로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큰 220 사를 지정할 경우, 자산규모(개별) 약 1,900 억원 이상인 상장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외감규정 §14)당기에 주기적 지정대상인 회사수가 9 년 평균을 초과할 경우 지정을 연기하여 다음연도에 지정(기존 발표대로 연간 220 사씩 분산지정, 시행과정에서 변경가능)

-다만, 향후 감리착수 또는 감리결과, 직권지정\* 해당여부에 따라, 실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될 회사와 자산규모가 변동 가능함

\*'19.9.1.(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20 년에 직권지정 받게 될 상장사를 선정

□(추정회사현황)주기적지정 추정회사(220 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 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 사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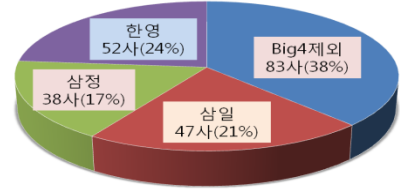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천억원이고, 이 중 137사(62%)가 현재('19년) 삼일 등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일 47 사, 삼정 38 사, 한영 52 사(안진은 '17 년 업무정지 조치로 '17 년에 신규수임('17~'19 년 감사계약)한 상장사가 없어 '20 년 주기적지정대상이 없음)

**‘20 년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회사 현황(‘19 년 외부감사)**

(단위 : 사, 조원)

구분	회사수	평균자산	평균매출액
유가증권	134 사	7.2 조	3.3 조
코스닥	86 사	0.5 조	0.3 조
합계	220 사	4.6 조	2.1 조



□ (‘21 년이후지정)‘21 년에는 전년도(‘20 년) 지정대상이었으나, 분산지정에 따라 차기로 지정이 연기된 회사 중 220 사가 지정되며

◦ ‘22 년에는 ‘20 년 지정대상 중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1 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 사**

**나. 시가총액 상위 100 사**

□ (지정시기)시가총액(이하, ‘시총’) 상위 100 대(‘19.5 월말) 기업 중 삼성전자 등 23 사가 시행철폐(‘20 년)에 지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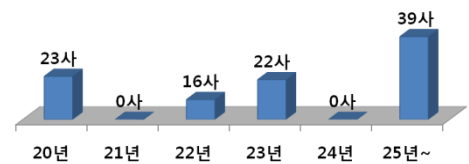
◦ 다음해(‘21 년)에는 전년도(‘20 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 대 기업 중 ‘21 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

◦ 이후 ‘22 년 16 사, ‘23 년 22 사가 지정되며, ‘23 년까지 과반 이상(61 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총 상위 100 사 주기적 지정 예상시기**

(단위 : 사)

‘20 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3	-	16	22	-	39



□ (지정연기사유)‘21 년 이후 주기적지정을 받는 77 사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체결한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 지정이 연기된 37 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31 사, 과거 직권지정 등으로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9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중인 회사와 감리결과 증선위로부터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 감리결과 무혐의인 회사



향후계획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고자 설명회 개최(7월경)

-주기적 지정제도의 내용,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Q&A 등을 상장회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

※현재 유관기관(상장협, 한공회 등)을 통해 제출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사전 이슈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설명회에서 검토결과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

◦(제도개선) 주기적 지정제도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추진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19.9.1.	→	'19.9.16.		'19.10.14.	→	'19.10.29.		'19.11.12.	→	'19.11.19.
	(2주내)				(2주내)				(1주내)	
지정대상 선정기준 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의견제출 (회사→금감원)	→	지정감사인 통지 (2020년)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회사 → 금감원)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9 세법개정안

2019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9.7.25.)

- 기획재정부는 2019. 7. 25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조특법)
  -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중견 3%.중소 7%→**2%.5%.10%**)
-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령) **※ 일몰 2년 연장**
  - \* (안전) 대기업 1%.중견 5%.중소 10% (생산성향상) 대기업 1%.중견 3%.중소7%
-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②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

구분	현 행	개 정
대상 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대상 추가
	·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안전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시설 등	·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LPG·위험물시설 안전시설 추가
	·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 (삭 제)
	· 소방시설, 내진보강시설 등	· (좌 동)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령) ※ 6.11일 기발표

구분	현행	개정
사후관리기간 단축	· 10년	· 7년
업종변경범위 확대	· 소분류(표준산업분류)내 변경 허용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자산유지의무* 완화 *20%이상 처분 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 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 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정규직근로자 80% 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이상 유지 (중견기업은 120%)	· (좌 동) · 중견기업도 120%→100%
불성실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 (신 설)	·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 (사전)·추징(사후)

※ 적용시기: (사후관리기간 단축·불성실기업인 배제) 개정 이후 공제 분부터 적용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 기준에 공제받고 사후관리중인 분에도 적용

□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 (0.5→0.45%)

\*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시행(6.3일, 시행령 개정)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법)

○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법 등)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전액 즉시 비용 인정

○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령)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 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 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0.1.1~6.30)
  - ②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 ('19.7.3~12.31 투자분)
  - ③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19.7.3~12.31 투자분)
- ※ ②·③은 별도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7.23일 국무회의 통과, 7월 중 시행 예정)

경제·사회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 등)

- ①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 ②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12%

㉓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 (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	동종업종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소득령)

-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 \*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금년부터 상향조정(190→210만원)된 점 감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축소(1년 유예)**
-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연 5% 이내
-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과세이연→분할납부)('22년 시행)**
-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국기법)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 허용
- \* (현행)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 \* (현행) (1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  
(개정) (1개월 이내)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 수정 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국기법)

- \* (현행) (6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1~2년 이내) : 10% 감면  
(개정) (3개월 이내) : 75% 감면, (3~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의 2%→1%)
- \* (현행)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소득법)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가 부과되는 기한 연장**  
(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까지→**25일까지**)
- \* (현행) 지연전송: 거래 2일 후~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0.3% 가산세  
미 전송: 지연전송 기한경과 후 →0.5% 가산세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령)

○ 할증을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현 행			개 정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상증법에 반영)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등)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현행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500만원 이하	500 ~ 1,500만원	1,500 ~ 4,500만원	4,500 ~ 1억원	1억원 초과
공제율	70%	40%	15%	5%	2%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소득법)

○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현행)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 이종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2019.06.1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운동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구단 선수로 활용하고 있음.

-외국인 운동선수들은 모두 국내에 자산이 없고, 가족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은 1년에 1~2주 가량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내용)

- (질의1) 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각 외국인 운동선수가 이종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 (질의2)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회신)

- ①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②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③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임.
- ④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2019.05.24)

(사실관계)

- AAA 외 00명(이하 “자문대상자들”이라 함)은 중국항공사에 고용되어 조종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이며
  - 중국항공사는 자문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2019.05.3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갑법인은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 갑법인은 해당 물품을 일본 A사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없이 일본 A사에서 을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베트남의 B사로 인도하고 대금은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여
  - 갑법인은 A사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을법인에 양도하고 을법인은 이를 B사에 양도하여 B사가 A사에 선하증권을 제시 후 물품을 인도받음.
    - 물 품 이 동 : A(국외) → B(국외)
    - 선하증권이동 : A(국외) → 갑(국내) → 을(국내) → B(국외)

(질의내용)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